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 조사의 목적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집행된 시설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과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각종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업장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별 공정을 파악하고 추진상황등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장마철을 대비한 그 동안의 수해복구 실태와 예방대책 그리고 주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등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각종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조사기간

1999년 7월 16일 ~ 7월 21일(6일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가. 조사대상기관

- 시 본 청
- 각 읍면동사무소

나. 조사사무의 범위

- '98 수해복구사업 및 '99 수해예방대책
- 토목·건축공사 추진실태 전반(5,000만원이상)
-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가로등, 간이상수도 및 농촌생활용수, 농산물 직거래장터)
- '99 도자기축제 및 2001 도자기EXPO 준비실태 전반

4.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가. 명 칭 :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나. 위원수 : 의원 12인

- 사무보조직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한봉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장상,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철호, 의사담당 원경희,

다. 조사반 편성

구분 반별	조사대상 사무	조 사 반		사무보조 공 무 원	담 당 읍면동	비고
		반 장	반 원			
1반	○ 수해대책 ○ 토목·건설 공사 ○ 주민불편사항 ○ 도자기축제 추진	유준열 위원	서동예 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한 봉 수	장호원읍 호법면 울 면	
2반	"	강기필 위원	이상복 위원 이종철 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 철 호	신 문 면 대 월 면 설 성 면	
3반	"	김정호 위원	김태일 위원 박용선 위원	의사담당 원경희	부 발 읍 마 장 면 창 전 동	
4반	"	원중성 위원	조명호 위원 김학인 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 장 상	백 사 면 모 가 면 중 리 동 관 고 동	

5. 특별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개최

1) 제1차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일 시 : '99. 7. 14(수)
-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안 건
 - 위원장 및 간사선임(위원장 고성옥 위원, 간사 강기필 위원)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2) 제2차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일 시 : '99. 7. 16(금)
-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안 건
 -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관련 실·국·소 현황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3) 제3차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일 시 : '99. 7. 21(수)
-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안 건
 - 주요사업 및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나. 위원회 활동

- 관련 실·국·소별 현황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 조사자료 검토
- 현지방문조사 및 확인

일 정	장 소	조 사 항 목
1 일 차 (7. 16)	특별위원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서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 현황파악 · 사업(공사)의 타당성 및 예산확보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공사) 실시계획 및 집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부진사업의 원인분석등

일 정	장 소	조 사 항 목
2 일 차 (7. 19)	읍면동 주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조사 · 사업(공사)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 설계도에 의한 시공여부 확인 · 우선 순위에 위한 사업선정 여부등
3 일 차 (7. 20)	읍면동 주요 사업장	"
4 일 차 (7. 21)	특별위원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조사 결과 취합 및 보고서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8 건 · 조 치 의 견 : 3 건

6. 조사결과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수해예방대책 미흡(소관 : 장호원읍)

지난해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장호원리 백지개발지구와 송산2리 택지개발지구, 풍계4리 경기P·C공장부지는 토지정리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또다시 기습 폭우가 발생할 경우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축사와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장호원리 백지개발지구는 하수관 설치로 토사유출을 사전 방지하고, 풍계4리 경기P·C공장부지 또한 인근축사 및 농지가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요함. 또한 송산2리 백지개발지구내의 이상준 농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람.

◎ 수해피해조사 누락(소관 : 호법면, 모가면)

호법면 동산2리 마을회관옆 소하천과 모가면 두미2리 하천제방이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어 복구대상지에서 제외 되었으며, 또한 피해보고가 되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완전 복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음. 앞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완전한 복구를 하여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함.

◎ '99 수해예방대책 미흡(소관 : 건설과)

'98년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금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으나, 행정사무조사일인 '99년 7월 20일 현재까지도 수해예방 자재를 읍면동에 미배정하여 수해예방을 소홀히 하였음. 수해예방 자재를 빠른 시일내 읍면동에 배정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수해복구 부진(소관 : 공통)

<마장면 오천리>

마장면 오천2리 수해복구사업(L=300m, B=4m)은 '99. 3. 11 착공하여 동년 4. 24 준공하였으나, 불성실한 조사와 시공으로 또다시 수해가 재발생될 우려가 있음.

도로 파괴된 부분과 새굴발생 방지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보수가 요구됨.

<대월면 초지2리 대홍천>

수해복구공사를 예산부족 이유를 들어 9곳에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응급복구된 일부 구간이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또다시 유실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응급복구 구간 40m를 추가공사 요망.

<대월면 군량1리 소교량>

군량1리 소교량 복구공사 상단부분 1m 정도가 침하되어 하천물이 바닥밑으로 흐르고 있음.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을 경우 교량 침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공사를 요하며, 소교량하단 하천쪽이 일부 유실되었는바, 예산확보 조치 바람.

〈설성면 대죽2리 교량〉

대죽2리 교량의 낮은 시공으로 폭우시 상습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또다시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교량을 2m정도 높게 재시공 바람.

◎ '98 행정사무감사결과 미조치(소관 : 모가면)

'98 행정사무감사시 모가면 신갈리 웅벽하자 발생을 시정토록하여 '98. 12. 3일 중앙토건(대표 김세재)에게 하자보수하도록 지시('98. 12. 10까지 하자보수 사업계획서 제출, '99. 3. 15 하자보수 완료) 하였으나, '99년 7월 20일 행정사무조사시까지 하자보수사업 계획서를 미제출하고, 하자보수를 미이행 하였음.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에 맞는 설계와 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함.

◎ 두미천 세굴 미정비(소관 : 건설도시국)

두미천의 세굴이 발생하여 유속이 빠르고, 송갈교 교각의 하부가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다른 부분의 하상이 높아져 있음. 두미천의 하상정리가 필요하며,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차보 설치가 필요함.

◎ 가로등 관리 소홀(소관 : 장호원읍, 부발읍, 읍면)

읍면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의 보유현황이 실제 장부와 맞지 않으며, 관리·보수대상 또한 미보유한 읍면도 있음(장호원읍, 읍면). 또한 보수비 부족으로 제때 수리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부발읍, 장호원읍, 읍면).

따라서 가로등의 설치, 폐기, 개보수등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조속히 예산 확보하여 보수 바람.

◎ 간이오수처리시설 하자로 민원발생(소관 : 신둔면)

신둔면 지석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간이오수처리시설중 오수관로 공사 하자로 인하여 장마시 우수가 오수관로로 유입되어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오수관로 맨홀과 오수정화시설 맨홀로 넘쳐 현지 주민이 조속히 보수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음.

'98년도 폭우시 오수가 넘쳐 주민이 보수공사 요망사항으로 하자사유를 조사하여 빠른시일내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요함.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부적정(소관 : 농정과)

'98년도 제2회 추경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시설보수 사업비로 3,830 만원을 이천농협에 민간자본 보조 하였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농협직판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집행 되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시정하지 않고 있음.

향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 의거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직거래장터로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고 매주 금요일만 직거래장터가 운영되고 있는 바, 아직도 많은 시민에게 홍보가 요구되며, 상설시장으로 활용되도록 시정하고 다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문 개설이 도로변으로 변경되도록 조치를 요함.

◎ 간이상수도 관리 소홀(소관 : 건설도시국, 읍면동 공통)

백사면, 모가면, 중리동의 간이상수도 29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음용수로 적합이 25개소, 부적합이 4개소가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질소의 과다초과량이 기준치보다 100%이상으로 검출되어 매우 심각한 실정임. 또한 부적합 판정시설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사실 통보가 미흡하고 부적합 지역 주민에게 음료불가 통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취수장 및 집수장의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시건장치가 미흡함.

간이상수도 이외에도 주민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를 요구함.

◎ 간이상수도 관리 소홀(소관 : 건설도시국)

설성면 금당1리 간이상수도가 '92년도에 암반관정, 관로매설, 집수정 설치가 완료되어 주민에게 급수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반대와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공사진행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되었고, 간이상수도시설이 방치되고 있음.
관계공무원의 정밀조사로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치 요함.

◎ 간이상수도 시설하자 보수(소관 : 건설도시국)

백사면 경사2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총예산 74,157,600원을 '98. 8. 28일 착공하여 '98. 12. 12일에 완료하였으나, 배수관 자재불량으로 20여회이상 누수가 발생하는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부분에 대하여 보수토록 하고 배수관의 부식현상을 규명조치토록 하고, 배수관 자재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현재 기반조성계와 상수도 관리사업소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를 상수도 관리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용수 전기 계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에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협의 요망.

◎ 남정1리~지석리 소하천정비(소관 : 신둔면)

신둔면 남정1리~지석리 소하천 석축공사 220m를 완료하였으나, 소하천 바닥면의 경사가 심하여 폭우시 석축공사 부분의 유실이 우려됨.
공사구간 220m에 낙차공 4개소 설치하여 유실방지 조치 요망.

◎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 공사방법 개선(소관 : 건설도시국)

신둔면 장동리 장신천 소하천정비사업 구간중 약 660m가 자연석 쌓기 구간인바, 장마철에나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자연석 쌓기공사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타 지역의 소하천 자연석 쌓기공사는 물이 계속 흐르는 장소 또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장소를 선택하여 공사하도록 개선바람.

◎ 정주권 개발사업 부진(소관 : 읍면)

정주권사업으로 완공한 마을 공유물인 읍면 산양1리, 북두2리 마을회관은 마을주민과의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되어 앞으로 회관건축 설계시부터 주민이 원하는 회관건립이 요원하며, 마을회관 천정벽 부위에 누수가 발생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 보수를 요함.

7.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 가로등 관리(소관 : 건설도시국)

각 읍면동의 가로등 현황이 예산서상 관리 숫자와 크게 차이가 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주관부서에서 일제조사를 재실시하고, 관리 또한 가로등 코드번호를 부착해 일괄통합 관리하도록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며, 수리·보수예산 또한 시에서 일괄 확보하여 분기별로 읍면동에 재배정 해주는등 전반적으로 관리방법을 재검토 하기 바람.

◎ 수해예방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조건 부여(소관 : 대민봉사실)

수해의 원인중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다반사로 속출하고 있음. 산림훼손 허가시 폭우를 대비한 예방대책 차원에서 새로운 조건부여가 필요하며, 산림훼손 허가지의 읍면동장 및 리장·통장과의 사전협의로 예방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바람.

◎ 가좌1리 진입도로 개설 건의(소관 : 건설도시국)

북하1교 신하리편 방면에 간이입체도 건설로 가좌1리 진입도로가 폐쇄되는 바,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좌1리 주민과의 사전협의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입도로가 건설되어야 할것임. 두산백주앞으로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